

의안번호	2207675
의 퇴 인	박성준의원
회 답 일	2025.2.4.
추 계 번호	25E04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·공연비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의
적용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도서·공연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준(소득기준)을 완화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99억원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
도서·공연비 등 소득공제대상 소득기준 완화 (안 제126조의2제2항)	-29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도서·공연비 등*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- (현행)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- (개정안) 총급여액 1억원 이하 * 도서, 신문, 공연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, 영화관람료, 체육시설이용료를 포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6조의2제2항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	○	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을 반영하여 2025년 중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 -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(이하 ‘신용카드 소득공제’)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에 발생(징수 기준)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감면 실적

- (감면실적) 2024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4조 1,183억원임¹⁾

1) ① [표 2] 기준 ① 2018년(2017년 귀속)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,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
② 2019년(2018년 귀속)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
③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2020년 3월과 4~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존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

- 2021년과 2023년 조세지출액은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로, 각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,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해당연도 조세지출 실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	2018 실적	2019 실적	2020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잠정
조세지출액	21,176 (14.2)	22,553 (6.5)	24,698 (9.5)	31,882 (29.1)	31,675 (-0.6)	39,458 (24.6)	41,183 (4.4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 방법

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의 총급여규모별·공제항목별 사용금액 집계자료(국세청 제출자료, 2022년 귀속)를 이용하여 추계

- 다만, 현행 도서·공연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게만 적용되며, 7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자에 대한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은 집계되지 않고 있음
 - － 총급여규모별 도서·공연비 등에 대한 1인당 사용금액은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의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 총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, 실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자의 사용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나,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신청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제공함에 따라 동 자료를 사용
- 따라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자의 1인당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6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자의 1인당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에 총급여 6천만~7천만원 이하자 대비 총급여 7천만~1억원 이하자의 연간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²⁾

④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 ⑤ 2023년(2022년 귀속)에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각각 20% 추가공제 적용
 ⑥ 2024년(2023년 귀속)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('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적용) 추가, 공제한도 통합 등 조정, 2023년(4~12월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2023년(1~12월)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80%로 한시 상향조정
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
- 다만, 2022년 귀속기준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에는 현행(2025년) 기준 도서·공연비 등 항목에 포함되는 영화관람료,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지 않으며, 이 두 항목은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함
- 개정안에 따른 개인별 추가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별 총급여규모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, 추가공제 한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총급여규모별 집계자료로 산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의 1인당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 전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
- 2022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, 이후 기간의 세수효과는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 -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(4.8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³⁾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준연도 이후 세수효과 증가율

(단위: %)			
구분	2023	2024	2025
소비자물가상승률 (A)	3.6	2.5	2.1
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(B)	4.8	4.8	4.8
합계 (A+B)	8.4	7.3	6.9

주: 1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까지는 실적치,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
 2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은 2022년까지 실적치, 2023년부터 2018~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(4.8%) 사용

(3) 추계 결과

-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·공연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2년 기준 약 2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2) 국세청의 총급여규모별·공제항목별 사용금액 집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와 동일하게 총급여 6천만원 초과~8천만원 구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제공하므로, 해당 소득구간 내에서는 1인당 사용금액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. 즉, 총급여 6천만원~7천만원 구간과 7천만원~8천만원 구간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총급여 7천만원~1억원 구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추정

3) 2024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(2024년 10월 기준) 활용

- 2022년 귀속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세수효과 제시
- 2022년 총급여 7천만원~1억원 이하 구간의 1인당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액 추정치는 24.4만원임
 - 총급여 6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자의 1인당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 (23.4만원)에 6천만원~7천만원 이하자 대비 총급여 7천만원~1억원 이하자의 연간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- 2022년 기준 세수효과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도서·공연비 사용금액 추정치(24.4만원)에 소득공제율(30%), 해당 소득구간의 한계세율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수를 곱하여 추정
 - $240\text{억원} = (24.4 \times 0.3 \times 0.15 \times 77.7\text{만명}) + (24.4 \times 0.3 \times 0.24 \times 88.3\text{만명})$
 -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총급여 6천만원 초과~8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수를 제공하기 때문에, 동 소득구간 내에서 소득분포가 균일하다는 가정하에 7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수는 6천만원~8천만원 소득구간 인원의 절반(77.7만명)일 것으로 가정

[표 4]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(2022년 귀속)

총급여규모	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 1인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¹⁾		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²⁾ (명)	한계세율 ³⁾ (%)
	도서·공연비 등 (만원)	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(백만원)		
1천만 이하	2.6	3.1	—	
1.5천만 이하	3.0	3.1	2,208	6%
2천만 이하	4.9	7.7	138,578	6%
3천만 이하	9.1	18.0	1,516,764	6%
4천만 이하	10.9	21.7	1,665,420	15%
4.5천만 이하	12.9	24.8	792,887	15%
5천만 이하	14.5	28.1	719,792	15%
6천만 이하	16.9	33.7	1,197,200	15%
8천만 이하	23.4 ⁴⁾	40.8	1,554,540	15%
1억 이하	24.4	44.0	882,722	24%

주: 1)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1인당 해당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임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신청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, 소득공제 신청자와 실제 소득공제 적용자의 사용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나,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신청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제공함에 따라 동 자료를 사용

2) 국세통계연보상의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(결정세액이 있는자)을 나타냄

3) 국세통계연보상의 총급여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1인당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한계세율

4) 총급여액 6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자의 연간 도서·공연비 등 사용금액임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및 2023년 국세통계연보(2022년 귀속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2년 기준 세수효과에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할 경우 소득세는 2026년 기준 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
도서·공연비 등 소득공제대상 소득기준 상향조정 (안 제126조의2제2항)	-29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